

법정의 텔레비전 방송이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고 재심을 명령

Estes v. Texas
381 U.S. 532(1965)

요즘은 대부분의 형사재판들이 텔레비전방송이 되지않는 것으로 여겨지나 1960 년대에 텍사스 주에서는 재판을 텔레비전으로 방송하는 빈도가 지나치게 높았다. 이런 사례중에 대표적인 것은 텍사스의 화려한 재정이인 빌리 솔 에스테스(Billie Sol Estes)의 사기에 대한 재판이다. 그는 사실심법정과 텍사스 형사공소심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에스테스는 궁극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판사가 에스테스의 원심이 사진 촬영되고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도록 허가한 결과로 인해서 재심을 받게 되었다.

1962 년 9 월에, 에스테스는 리비스 군으로부터 재판지변견을 허락 받은 후에 서쪽으로 약 500 마일 떨어진 텍사스 주 스미스 군에 심리전에 도착했다. 9 월 24 일에 시작된 심리에서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채워졌고 약 30 명은 통로에서 있었다. 뉴욕 · 타임즈의 기사는 그 재판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대륙횡단버스만큼 큰 텔레비전 중계차가 법원밖에 주차하고 있었고, 그 법정의 2 층은 중계용설비들로 숲을 이루고 있었다. 두 대의 텔레비전 카메라가 법정칸막이의 안쪽에 자리잡고 있었고, 네 대의 카메라가 눈에 띄게 문바로 밖에 정렬되어 있었다. 케이블과 전선이 층계를 뱀처럼 휘감고 있었다. 』

사진기자들이 법정을 이리저리 통제 없이 돌아다녔고, 한 사진기자는 재판석의 뒤로 가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에스테스의 변호사는 모든 카메라들이 법정으로 부터 철거되도록 요청했다.

1962 년 9 월 25 일에 이들간의 심리가 끝난 후, 판사는 피고에게 10 월 22 일로 심리연기를 허락했다. 예상되는 배심원들에 대한 심문 또는 증인의 증언에 대한 방송을 제외하고는 재판의 생방송이 허락되었다. 중요한 텔레비전망인 CBS, NBC 그리고 ABC, 거기에 그 지방 텔레비전방송국인 KLTV 들이 각각 텔레비전 카메라(녹음장치는 제외시켰을) 한대씩을 설치하도록 허락되었고, 그 외 다른 텔레비전 방송국들은 방송용 녹화 필름을 일괄적으로 제작하도록 허용되었다. 그 위에, 비록 다른 타협이지만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Associated Press), 유나이티드 프레스(United Press) 그리고 그 지방 신문의 정사진 사진기자들이 법정내에서 촬영하도록 허가되었다.

KLTV 는 그 법원의 허락을 받고 자비로 법정의 뒤쪽에 좌대를 만들어 법정의 색깔과 동일하게 색칠을 했다. 좌대에 있는 4 대의 카메라들이 재판절차를 촬영하도록 허용되었다. 어쨌든, 이 작은 법정에서 보이는 것은 온통 카메라천지였다.

판사가 텔레비전과 사진기자들을 일부나마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의 다수판단은 에스테스가 수정헌법 제 14 조의 정당한 절차조항의 위반으로 인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워렌 대법원장과 더글라스, 골드버그 그리고 클라크 대법원

판사들은 어떤 형사재판이든간에 텔레비전방송이 허용되는 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5 : 4 판결의 다섯번째 다수자인 하란 판사는 이 사건이 「가장 악명 높은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에스테스의 유죄판결을 파기하는데 표를 던졌다.

다수 의견의 클라크 판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우리들은 수정헌법 제 6 조가 보장하는 것은 「공개재판」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시작했다. 공개재판이 요청되는 목적은 피고가 공정하게 다루어 지고 그리고 불공정하게 유죄판결을 받지않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에스테스 사건의 재판과정은 신성한 법정인 기계 장비들로 압박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어쨌든, 수정헌법 제 1 조가 보장하고 있는 자유가 뉴스 매체들이 법정에서 텔레비전방송을 할 권리까지로 확대되고 그리고 이 특권을 부여하는 권리가 신문과 텔레비전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언론의 권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자유로운 언론은, 정부정책에 대해 공익을 환기시키고, 공무원들과 고용인들의 부패를 폭로하고 그리고 재판절차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시민의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강력한 촉매역할을 해왔다. 동시에, 민주사회에서 이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언론에게 최대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하고, 언론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재판절차에 대해 절대적인 공정을 유지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클라크 판사는 전파저널리즘의 옹호자들에 의해서 가끔 제기되는 논쟁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결정을 시도했다. 그는, 만약 법정이 텔레비전 카메라 또는 마이크로 · 폰을 법정에서 축출한다면, 전파저널리즘 옹호자들이 인쇄매체를 위해서 전파매체를 차별한다고 주장할 것에 대해 촛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클라크 판사는 『신문기자는 그의 타이프라이트 또는 인쇄기를 소지하고 입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는 역시 텔레비전 장치와 카메라가 좀더 조용하고 그리고 분에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인 진보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시사했다.

클라크 판사는 형사재판을 텔레비전방송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것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법정의 중대한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대신 텔레비전이 배심원들로 하여금 편견을 갖게 하는 기회를 아주 잘 증대 시킬지도 모르는 부적절한 사실을 재판과정에 주입시킨다고 클라크 판사는 논했다. 즉 배심원들은 카메라를 그들을 「경계하는 위험신호」로 인식함으로써 정신상태가 산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체 재판과정이 텔레비전으로 방송이 되고있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그들의 주의가 흐트러졌을지도 모른다. 역시, 만약 재심이 명령 되지 않았더라면, 두 번째 심리를 위한 배심원들이 첫번째 심리에 대한 텔레비전방송을 통해서 본 것에 의해서 편견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클라크 판사는 재판법정을 텔레비전으로 방송하는 것이 증인들의 증언의 질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증인이 많은 시청자들에 의해서 관찰되어 지고 있다는 사실이 증인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게 헤아릴 수 없다. 몇몇은 주눅이 들어서 겁을 먹을지도 모르고, 몇몇은 거만

떨고 과장할지도 모른다. 즉 기억을 더듬거리게 될지도 모르고, 진술의 정확성이 심하게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 방해는 자연적으로 극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의 추구를 저해할지도 모른다.』

덧붙여서, 재판을 텔레비전방송하는 것은 단순히 재판과정에서 공정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판사의 임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에 있는 텔레비전카메라의 존재는 비록 그것이 「경찰관서 또는 엄중한 취조와 유사한」 심리적 괴롭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법정에 있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존재는 클라크 판사에 의해서 정신적인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클라크 판사는 다음과 같이 부언했다.

『특수한 형사재판의 피고는 경기장 또는 시, 전국적인 투기장이 아닌 법정에서는 그의 날(일)일 권리가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보도에 의해서 야기된 여론의 소요는 필연적으로 편견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을 텔레비전방송하는 것은 우리들의 체계에 맞지 않는다. 나아가서, 텔레비전방송은 역시 피고의 효과적인 변호를 박탈할지도 모른다. 일반 청취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텔레비전에 의해 제공되는 유혹, 그리고 변호사와 소송의뢰인과의 두터운 신뢰관계에 대한 침해, 혼란은 가끔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판사, 배심원 그리고 증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

워렌 대법원장은 더글라스 판사, 골드버그 판사와 함께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워렌 판사는 형사재판을 텔레비전 방송하는 것은 법의 정당한 절차에 대한 부정이라는 클라크판사의 견해에 동의했다. 워렌 판사는 텔레비전방송이 재판에 관계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피할수 없는 영향을 줌으로써, 재판의 본연의 목적으로 부터 재판을 전환시킨다고 논했다. 나아가서, 텔레비전에 의해 방송된 재판은 워렌 판사로 하여금 재판과정의 위엄을 손상시키고, 그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는 느낌을 들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장은 재판이 텔레비전 방송된 몇몇 피고들은 다른 피고들이 경험하지 못한 편견된 조건하의 법정에서 여러 날 동안 외톨이가 된다고 논했다.

워렌 판사는 법정으로부터 카메라와 마이크로 · 폰을 축출하는 것이 불공정하고 위험적으로 전파매체를 차별한다는 논쟁들을 배척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텔레비전 매체가 다른 커뮤니케이션 매체처럼 재판에 대표자들을 참석 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시청자들에게 이러한 재판을 보도하는 것이 자유로운 한, 언론자유는 축소 없다.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재판과정에 대해서 논평할 권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재판의 목적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논평을 재판과정의 구조에 주입시키는 권리를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다.

생방송이 신성한 성역에 들어오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이 위태롭게 되므로, 텔레비전 방송국의 대표들은 다만 일반대중이 갖는 권리만을 향유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재판과정을 관찰하기 위해서만 방청되어야 하고, 그리고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그 후에 재판과정을 보도하도록 해야만 한다. 』

워렌 판사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존 마샬 하란 판사는 악명 높은 에스테스 사건에서의 텔레비전을 사용한 것은 수정헌법 제 14 조의 적당한 절차 조항에 의해서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이루어졌다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설사 그렇더라도, 하란 판사는 다음과 같이 시사했다.

『...법정에서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것이 재판절차의 존엄성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모든 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사건으로 받아들여 질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 그 시기가 오면, 헌법상의 판단이 요청에 의해서 또는 당연히 그 정당한 절차 조항의 관례적인 운용에 따라서 재검토되어야 될지도 모른다.』

소수의견에 속하는 스튜어트, 블랙, 브레난 그리고 화이트 판사 등은 어쨌든 텔레비전의 발전단계에서 법정으로 부터 텔레비전방송을 금지하는데 관해 헌법적 논쟁을 제기했다. 스튜어트 판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나는 적어도 현상태의 방법으로 텔레비전을 법정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극도로 현명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많은 헌법적 위기를 불러 일으키고 법정의 고유한 위엄을 손상시킨다. 그러나, 나는 이 개인적인 개념을 헌법적 규정 자체로 까지 확대시킬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특수한 기록에서 피고의 재판에 대한 제한된 텔레비전방송에 수반된 상황이 미연방헌법에 의해 피고에게 보장된 어떤 권리를 거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

스튜어트판사는 그 법정이 패거리들의 점유에 의한 지배, 불법재판의 환경 또는 편견으로 격분된 배심원에 대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법정의 제한적 허락에 대한 사건이송명령은 「심리 자체에 대한 카메라와 정사진의 제한된 반입」이라는 단 한가지 문제를 고려한다면 그의 동료들을 용납해야만 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1962년 9월에 마치 곡마단과 유사한 이틀간의 심문과 같은 재판전의 사건들은 문제가 아니었다. 대법원이 고려했어야 할 단 한가지 문제는 1962년 10월 22일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에스테스의 심리이다. 스튜어트판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수정헌법 제 1 조의 요구가 이 사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동시에, 나를 의견의 일치를 해하는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다수의견에 속하는 나의 동료들에 의해 정리된 의견 가운데,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방 또는 주의 간섭을 반대하고 수정헌법 제 1 조와 제 14 조의 보장을 위한 암시가 있다.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대중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주장은 바로 하여금 길은 염려를 불러일으키게 했다.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들에게 그것들의 법정반입을 정당화 시키는 짐을 부과하는 사고는, 그 가정이 수정헌법 제 1 조에 보장된 자유들의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는 나의 평소의 생각과 모순된다.』

스튜어트 판사에게 있어서, 에스테스 사건의 헌법적 문제는 수정헌법 제 14 조가 주 법정에서 형사재판으로 부터 텔레비전 카메라를 배척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스튜어트, 화이트, 블랙 그리고 브레난 판사는 단순히 텔레비전이 재판을 방송하는 것을 반대하는 정당한 논거가 충분히 잘 입증되었다고 믿지 않았다. 화이트와 브레난 판사는 이러한 텔레비전 방송을 반대하는 서투른 금지는 시기상조라는 별도의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 소수의견으로서, 브레난 판사는 에스테스판결이 「주 형사재판의 텔레비전 방송을 반대하는 포괄적인 헌법상의 금지가 아니었다.」는데 만족했다. 에스테스 사건의 다수의견에 속하는 견해에 대한 텔레비전방송은 다만 「악명 높은 재판」에 대해서만 텔레비전방송을 금지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세심한 규제조치가 행해진 상황하에서조차도, 판사들은 확실히 법정으로부터의 텔레비전방송을 허락하는 것이 재판을 「악명 높게」 만드는 것인지의 여부를 그들 자신들에게 자문것 같다. 윌리엄 A. 허친이 기술한 바와 같이, 에스테스 판결은 법정에서 텔레비전을 죽인 것이 아니고 텔레비전을 위독상태에 남겨둔 것이다.